

국토교통부예규 제 153 호

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안

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의2의 시간란 중 “2시간”을 “3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교육 최소 포함내용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기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식별·감시하는 절차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0의2]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(제22조 관련)

과 정 명	승무원 정기 보안교육과정
대 상	승무원
시 간	연1회 최소 3시간 이상
과정목표	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보안관련 정보지식, 기술습득 및 승무원 자질향상
교관요건	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.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.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.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.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.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

<p>교육 최소 포함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안절차 및 관련 규정 제·개정 사항 2. 국내외 항공보안 위협 현황 3.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4. 조종실 보안 5. 항공기 납치, 사보타지 등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6.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안 조치 7. 항공보안 인적요소 8. 기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식별·감시하는 절차
